

서울지방법원

2001. 10. 11. 판결선고	인
2001. 10. 11. 원본영수	

제 6 민 사 부

2001. 10. 11. 판결선고

판 결

사 건 2001나544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 2001. 8. 30.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등부지원 2000. 11. 24. 선고 99가소113755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461

이동진 임마사
2001년 10월 11일

법원주사 박찬우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20.부터 2001.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위 청구원금의 지급만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한편,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금 4,000,000원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대하여도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피고 회사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원고를 비롯한 변호사들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소속 간사들은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999. 3. 20. 08:50경 위 주주총회 개최장소인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한마음예술회관에 입장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의 일행들은 위 주주총회의 경과를 기록, 확인할 목적으로 캠코더와 사진기를 소지한 채 위 주주총회장으로 입장하려 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인 총회진행요원들은 이를 제지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변호사와 함께 주주총회장의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하여 위와 같이 총회진행요원들과 다툼을 벌이던 일행들과는 별도로 먼저 위임장 확인을 마치고 위 주주총회장으로 입장하려 하였는데, 그 입장과정에서 위 총회진행요원 중 1명으로부터 주주총회관련서류들, 체육복, 양말, 속옷, 세면도구 및 화장품 등이 들어있던 원고 가방 안의 내용물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었다.

라. 당시 피고 회사는 위 주주총회장의 입구에 '주주총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류, 인화물질 기타 유해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카메라, 캠코더 등은 보관대에 보관시켜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게시하였고, 위 총회진행요원들은 원고의 일행들에게 위 안내문의 내용과 함께 주주가 요청하는 경우 위 주주총회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에서 위 주주총회의 전 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제공하겠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실제로 피고 회사는 위 주주총회의 전 과정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였는데, 그 촬영내용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주주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의한다 하더라도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사진기나 캠코더를 소지하고 입장하는 것 자체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거나 이를 위하여 주주총회장에 입장하는 주주의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피고 회사의 직원인 위 총회진행요원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주총회장에 입장하려 하는 원고의 가방을 강제적으로 확인, 검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총회진행요원의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주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의하여 주주총회장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주총회장에서의 소지품을 제한하고 그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장에 입장하는 주주의 소지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것은 모두 적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의 가방에 대한 검사를 행한 위 총회진행요원은 원고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단지 원고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의 내용물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위 요청에 응하여 가방을 열고 그 내용물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다툰다.

3. 판 단

살피건대, 주주총회 의장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 중 질서유지권 행사의 일환으로 주류, 인화물질 기타 유해물질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한편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주주총회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진기나 캠코더 등 촬영장비를 소지하고 입장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앞서 본 주주총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의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촬영장비의 사용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목적범위를 벗어나서 주주총회장에 참석한 다른 사람의 초상권 등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비밀 등이 외부에 누설되어 경영권이 침해받는 등 타인의 법익이 침해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측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의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면, 사전에 허가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장에서의 사진기, 캠코더 등 촬영장비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장에 입장하는 주주의 소지품에 대해 검사하는 것도 일용 주주총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범위 내의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직원인 총회진행요원들이 캠코더와 사진기를 휴대하고 위 주주총회장으로 입장하려 하는 원고의 일행들을 제지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에 입장하는 주주의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 그 상대방인

주주가 사생활 영역에서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부당한 신체적인 구속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인격권과 총회 참석권 역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가방 등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그 가방의 크기, 형상, 수량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소지나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의 동의 아래 그의 명예감정 등을 손상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지품을 따로 보관해 두고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여성의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에 의하거나 기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을 적절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1.의 다.항에서와 같은 원고의 가방에 대한 확인, 검사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져 행하여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의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사진영상과 제1심 증인 , , 당심 증인 , , '의 각 증언(다만, 위 , , '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 및 제1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당시 원고의 일행들이 위 총회진행요원들과 사진기, 캠코더 반입문제로 다툼을 벌이기는 하였으나, 여성인 원고는 위 다툼에 관하여지 않은 채 먼저 주주총회장으로 입장하려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 총무부 산업보안팀 직원으로서 남성인 총회진행요원 중 1명은 원고가 끈으로 여단을 수 있는 가로, 세로 각 40cm 정도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원고에게 주주총회장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위 가방을 검사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위 가방에는 아무 것도 없다면 그 검사

를 거부하였음에도, 위 가방을 자신 쪽으로 잡아당겨 손으로 가방 입구를 벌리고 그 속을 들여다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 , '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이 행한 원고의 가방에 대한 확인, 검사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소지품 검사의 적법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여한 위법한 것이고, 이러한 위법한 소지품 검사로 말미암아 원고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자료의 수액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침해의 정도, 피고 회사와 원고의 관계, 원고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교육정도 및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발생일인 1999. 3. 20.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1. 10.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당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0. 11.

재판장

판사

김지형

김지형

판사

이원

이원

판사

전연숙

전연숙

468

- 8 -